

인천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나57428 판결 [보증금 청구]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나5742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2. 23 선고 2022가단21136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성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덕

변론종결 2024. 7. 19.

판결선고 2024. 10. 11.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2. 23. 선고 2022가단211361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9면 제14 내지 19행 괄호 안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대여금 300,000,000원의 경우 2021. 7.부터 매월 50,0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고(을 제9호증), 2020. 12. 22.자 선수수료 100,000,000원의 경우 2021년 1월분 정산금(2021. 2. 지급)에서부터 공제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갑 제12호증의 1 3, 4쪽), 2021년 2월분 정산금부터의 구체적인 차감액수는 F의 요구대로 매월 3,000만 원씩만을 차감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11호증의 1 5쪽, 2021년 1월분의 경우 명확하지는 않으나, 정산금 전액이 위 선수수료에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F은 이에 대하여 “2021. 2월분 수수료의 경우 수수료금액에서 매입금액을 뺀 차액(45,127,500원)에서 위 선수수료 100,000,000원 공제명목으로 30,000,000원을 차감하지 말고 위 금원을 그대로 지급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3월분 정산금부터는 위 선수수료 100,000,000원 뿐 아니라 300,000,000원에 대해서도 차감을 해도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갑 제11호증의 1 12, 13쪽), 2021년 2월분 정산금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하기를 원했으나, E은 이에 대하여 “죄송하지만 저희도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F의 위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11호증의 1 24쪽)]』

○ 제9면 제21행 “타당하다.”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21. 2. 19.부터 2021. 6. 22.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판매수수료 346,747,900원 중에서 309,424,900원은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 557,828,300원(대여금 3억 원 + 선 수수료 155,905,400원 + 매입대금 101,922,900원)과 상계되어 2021. 6. 22.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233,226,900원(매입대금 101,922,900원 + 대여금과 선지급금 일부)가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여금과 선수수료 1억 원 모두 2021년 3월분부터 정산해 나가자는 F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 바, 결국 원고와 소외 회사는 처음 약정대로 수수료에서 매입금액을 뺀 차액, 즉 정산금에서 선수수료 1억 원만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 약관 제2조에 의하면, 지원(대여)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고, 약관 제26조에 의하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은 지원금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지원금의 의미 자체도 모호하므로 결국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3억 원 대여금채무 역시 보증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의 특기사항에는 ‘보험계약자가 지원받는 지원(대여)금 채무는 담보하지 아니함’이라고 정하고 있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 대여금채무와 통신사업자 대리점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명확히 구분이 되므로(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차승환, 판사 김한울, 판사 이지현